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02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5202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2. 경제형벌 규정 과태료로 전환(제91조제5호 및 제92조제3호 삭제, 안 제94조 등)	7
3. 先시정명령-後형벌부과로 경제형벌 완화(안 제42조, 안 제84조의2 신설 등)	12
※ 참고자료	19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221520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12.
3. 회 부 일 : 2025.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이후 시설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 약관을 미신고·미준수한 경우 및 시설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자 등이 경미
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
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¹⁾의 영업 활동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먼저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규정을 적용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개정안에 따른 경제형벌 개선·완화 내용
벌칙 → 과태료	준수 의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35조, 제49조의3제6항 단서, 제49조의10제2항 단서)
	형벌 규정 개정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2조제3호) → (개정안) 500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94조제2항제1호의2)
	준수 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금품 수수 금지 의무(제34조의2제1항)
	형벌 규정 개정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91조제5호) → (개정안) 500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94조제2항제6호의3)
先시정 명령 - 後형벌	준수 의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제9조제1항, 제49조의9, 제49조의16)
	형벌 규정 개정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2조제2호) → (개정안)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84조의2제1호, 안 제92조제17호)
	준수 의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의무(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5조, 제49조의3제6항 본문, 제49조의10제2항 본문)
	형벌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2조제3호) →

구 분		개정안에 따른 경제형벌 개선·완화 내용
	규정 개정	(개정안)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84조의2제2호·제5호·제6호, 안 제92조제17호)
	준수 의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 시설 공사를 끝낸 후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설 확인을 받을 의무 (제38조제4항)
	형벌 규정 개정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2조제13호) → (개정안)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42조제3항, 안 제92조제13호)
	준수 의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제40조제1항)
	형벌 규정 개정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2조제14호) → (개정안)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84조의2제3호, 안 제92조제17호)
	준수 의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을 의무 (제41조제1항)
	형벌 규정 개정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2조제13호) → (개정안)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84조의2제4호, 안 제92조제17호)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속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사업자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사업체, 사업주 및 임직원 등이 영업 활동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기관의 처분·조치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등의 대상이 됨.

이 중 형사처벌은 단순한 금전 부담에 그치는 과태료나 행정적인 처분·조치를 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거쳐 전과가 남는 강력한 제재임.

그런데, 사업체의 영업 활동상 가벼운 행정적 의무 위반에도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벌을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과 처벌 수준의 비례성에 반할 뿐 아니라 사업주나 임직원을 전과자로 양산하거나, 창의적인 혁신 시도나 투자를 위축시켜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에 불합리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버스, 택시, 렌트카, 플랫폼운송사업 등 여객 운수사업을 규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형벌규정 중 사업자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를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위반행위는 먼저 시정명령 단계를 거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고, 영업 활동상의 제약 요인을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반영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형벌규정의 개선
·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경중과 처벌 수위 간의 균형성,
형벌 완화 시 실질적인 입법 목적 달성 효과, 유사 위반행위의 처벌 수준
과의 형평성, 과태료 부과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정부는 2025년 7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하여 전
부처 차원에서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
전환,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선의의 사업주
보호 등을 추진 방향으로 하여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를 추진 중이며, 개
정안의 내용은 2025년 9월과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²⁾ 포함되어 있음.(참고1. 참조)

나. 국토교통부 의견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개선과제에 포함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함.

2) 2025. 9.30.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110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 과제) 발표, 2025.12.30.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 과제) 발표.

2. 경제형벌 규정 과태료로 전환(안 제94조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등과의 부정한 금품수수 금지 의무(현행법 제34조의2제1항3))를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현행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35조, 제49조의3제6항 단서, 제49조의10제2항 단서4))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현행 형벌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려는 것임(제91조제5호 및 제92조제3호 삭제, 안 제9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같은 항 제6호의3).

현행	개정안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6. 7. (생략)	제91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7. (현행과 같음)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92조(벌칙) ----- ----- -----.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u> 제9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6의2. (생략) 6의3. <u>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u> 6의4. ~ 16. (생략) ③ ~ ⑤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0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2항 단서(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9조의3제6항 단서 또는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u> 2.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u>제3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u>----- 6의4. ~ 1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1조제5호 및 제92조제2호·제3호·제13호·제14호·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대여자동차 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받는 부정 행위를 금지 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정 금품수수 금지 의무와 위반 시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⁵⁾,

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 아니 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 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⑥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②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77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주요내용

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할 수

고장·사고 시 사고대차는 대부분 보험사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대여자동차 사용자가 대여업체를 선택하는 현실에 비추어 자동차대여 사업자와 정비업자 등 간의 알선 및 금품수수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이 예전보다 낮아진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형벌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과태료는 경미하거나 수시로 과하여지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 또는 명령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일반적으로 신고, 보고, 행정상 명령, 조사, 교육, 게시 등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정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장·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징역(1년) 또는 벌금(1천만원)에 처하던 것을, 대여자동차 사용자에게 대여업체 선택 권한이 있고, 사고대차는 보험사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500만원 이하)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함.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제91조).

운송사업자(대여사업자 포함) 및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한 사업자에게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는 것에 동의함.

3. 先시정명령 後형벌부과로 경제형벌 완화(안 제84조의2 신설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의무⁶⁾ 및 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의무⁷⁾,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시설확인 의무⁸⁾, 사용약관 신고 의무⁹⁾ 및 시설사용료 인가 의무¹⁰⁾ 위반에 대한 현행 형벌 규정(1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하고, 이들 의무 위반 시 행정기관이 먼저 시정을 명한 후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 형벌규정(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현행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안 제84조의2 신설, 현행 제92조제2호·제3호·제14호·제15호 삭제, 안 제92조제13호 및 안 같은 조 제17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u>아니한</u>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아니하거나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 확인을 받지 아니한</u> ----- -----.
<신 설>	<u>제84조의2(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1.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터미널사업자가 사용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터미널사업자가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49조의3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49조의10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벌칙) ----- ----- -----.
1. 삭제	

현행	개정안
2.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 10의3. (생략) 11.·12. 삭제 1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 14.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5. 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6. (생략) <u><신설></u>	<u><삭제></u> <u><삭제></u> 4. ~ 10의3. (현행과 같음) <u>13. 제42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u><삭제></u> <u><삭제></u> 16. (현행과 같음) <u>17. 제84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현행	개정안
	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1조제5호 및 제92조제2호·제3호·제13호·제14호·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제재를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위반행위는 먼저 시정명령 단계를 거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 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함과 함께 운수사업자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고, 운수업계의 영업상 제약 요인을 완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현행법에서는 운수사업자에게 운송약관(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여약관(자동차대여사업), 사용약관(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플랫폼운송약관(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약관(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신고의무를 부여하고¹¹⁾ 미준수 시 모두 동일하게 1천만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 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 (참고2. 참조)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5조, 제49조의3제6항 본문, 제49조의10제2항 본문 (참고2. 참조)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4항 (참고2. 참조)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 (참고2. 참조)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 (참고2. 참조)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¹²⁾, 개정안에서는 이 중 대여약관을 제외하고 운송약관과 사용약관의 미신고 시에 대해서만 先시정명령-後형벌부과로 전환하여 형벌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시정명령은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위법상태의 제거를 명하면 사업자에게 시정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서, 의무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시정을 명할 때에는 ‘시정기간’을 정하여 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¹³⁾.

다음으로,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38조제4항¹⁴⁾에 따른 여객자동차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사용약관) ①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 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 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3) 시정명령은 “○○(행정기관)은 영업자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법률상 기준을 미달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2024.5. 국회사무처 법제실), p.319.]

터미널사업자의 시설 확인을 받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2조제3항¹⁵⁾에 두고 있는데, 법체계상 해당 의무의 실제 규정인 제38조 또는 개정안에서 신설한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인 안 제84조의2로 이관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행정조치만으로 법익 회복이 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벌금(1천만원)에 처하던 것을 삭제하되, 안 제42조 제3항 및 제84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 (1천만원)에 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동의함.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대기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②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1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1·2차 방안 세부내용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정비 과제

※ : 개정안 포함 과제

연번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1	여객자동차법 (§91-5)	부정한 금품수수 등 불법 자동차대여사업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2	여객자동차법 (§92-3)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1천만	(1) 신고사항(경미한 위반) 형벌폐지 → 과태료 전환 (2) 인가등록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3	여객자동차법 (§92-13)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4	여객자동차법 (§92-14)	터미널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5	여객자동차법 (§92-15)	터미널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6	여객자동차법 (§92-2)	여객(플랫폼운송·가맹사업포함)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7	여객자동차법 (§92-9)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한 경우	-	1천만	구성요건 축소 * 무자격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중대교통사고는 사업자의 과실도 포함)
8	여객자동차법 (§92-10)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조문

부정 금품수수 금지 의무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신규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신고 의무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

	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路線廢止)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5.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3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수송 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이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3.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수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減車)의 실적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대수를
--	--

	배분하는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⑨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면허기준 대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운송약관 신고의무	제9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

	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시설확인 의무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약관 신고의무	제40조(사용약관) ①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

	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설 사용료 인가의무	제41조(시설 사용료) ①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인가기준 등 시설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벌칙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09. 5. 27.> 2.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제11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6. 제14조(제35조·제48조·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7. 삭제<2009. 5. 27.> 8. 제16조(제35조·제48조·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9.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0.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시정조치 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대여한 자 10의3.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2015. 6. 22.> 12. 삭제<2015. 6. 22.> 1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 14.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5. 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43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규모와 구조·설비 등을 변경한 자
과태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3의5.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6의2.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6의4.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삭제<2012. 2. 1.> 8. 삭제<2012. 2. 1.>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	---

	2.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④ 제26조제3항 또는 제49조의8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